

memo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치료 완료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효:3년)

- 단, 사고 접수 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며, 사고 접수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초진차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진단서', '등본' 제출



학부모님이 위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시면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발생신고서', '공제급여청구서' 취합하여 공제회로 등기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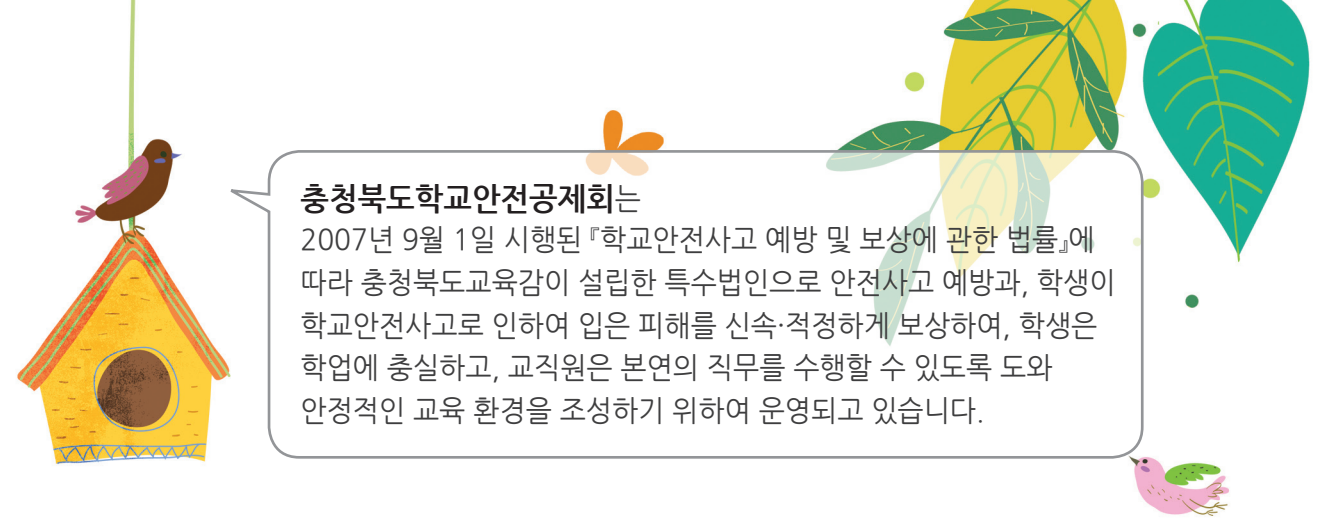
통장사본, 초진차트 외 모든서류는 원본 제출

※ 공제급여 결정 여부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공제급여청구 시 주의사항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함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질병은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 ④사고 원인의 독립성 ⑤ 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교내·외 특별활동 및 대회 출전 중의 사고는 교육 활동 실시계획서 및 관련자료 첨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타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우 보상 대상 또는 지급액에서 제외하므로 관련 서류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소 : (우:2854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3
- 전화 : 043)252-7109 • 팩스 : 043)253-0177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http://chungbuk.ssif.or.kr/>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 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들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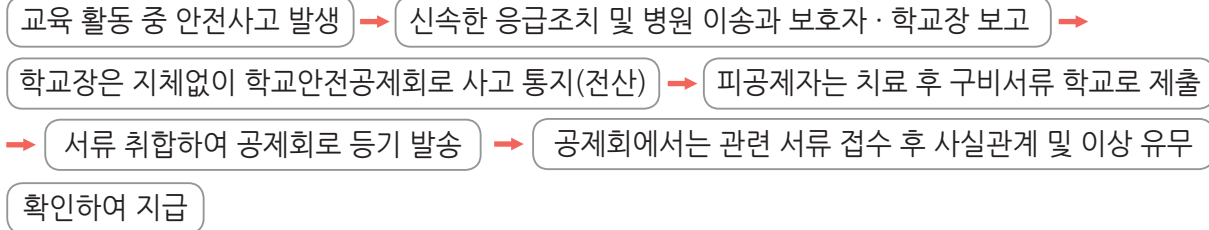
[2017학년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들의 사고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Chungbuk-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사고 처리 및 청구 절차



:: 공제급여 개요 및 종류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학교안전 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이란(법률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다음의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항목 및 나.항목과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학교장 관리 감독 하의 질병이란? (법률 제2조제6호, 시행령 제3조)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사고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 자해 또는 지병이 원인이 된 사고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
- 교육계획 및 관리·감독의 주체가 학교장이 아닌 위탁 교육
- 개인 질환·질병 치료 병행 및 기왕증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성 질환, 퇴행성 질환, 소화불량, 감기 등)

공제급여 종류 중 학교안전사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료비용의 신청 제도는 ‘**요양급여**’입니다. 지급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요양급여 산정 기준	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비급여* 항목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예 외
	공제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	부지급	세부기준** 에서 정한 일부 항목 지급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약제, 주사제, 사용료, 처치료 등의 모든 항목

** 세부기준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용은 모두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 대상이군요.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급여 치료의 대표적인 항목들도 알려 주시겠어요?

구 분	치료 항목 및 한도	
치아 보철(한 대당)	보철	400,000원 한도 (2회 인정)
	레진	120,000원 한도 (1회 인정)
	포스트	124,000원 한도 (1회 인정)
	임플란트	2,000,000원 한도(1회 인정) 단, 일반 보철 불가능한 경우
자기공명영상(MRI)	1회 인정	
무통제	인정	
흉터제거수술	1회 인정	
선택진료료	입원	전액 인정
	통원	첫 통원 선택진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함

학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항목 중 지급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 치료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운동부훈련 등의 특수한 상황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의 재활치료는 해당되지 않아요!

